

역사교육과 간도 문제



강창석 | 동의대학교 총장

강창석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였고, 동아대학교에서 문학 석사학위, 영남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자문위원, 부산시 사편찬위원회 위원, 역사교육연구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동의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실무위원,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이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통감부연구 1·2』,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인성론』, 『부산이사청을 통해 본 일제의 대한 정책』 등 다수가 있다.

간도 지방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주장하는 논리의 타당성과 이를 입증할 만한 사료 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학계에서는 간도 지방이 한국의 영토임을 다각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환기시키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국제사회와 중국 정부에 선언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례적으로 국경 영토에 관한 조약 등과 같은 국가간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국제관례로 분쟁 해소의 기간이 조약체결 후 100년을 소멸 시효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간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합의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2009년일 것이다. 이 시기까지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간도 영유권은 중국 소유로 확정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의 신장으로 한국민족의 통일이 현실화되고, 이로써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간도 문제에 대비한 논리적,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중국 정부 당국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지원하에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위 동북공정의 저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는 주권을 회복한 이래 이러한 간도 문제에 대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뒤에 더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권 국가로서의 자세라 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국경 영토 문제에 관한 한 국가가 직무를 유기한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역사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민족통일

후 반드시 제기될 수 있는 중국과 간도 영유권 귀속에 대한 교섭 근거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도 영유권의 중국 귀속에 대한 부당성 및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몇 가지 방향에서 역사교육의 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그 근원은 한·중 변경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공정의 중심과제로 추진되었던 간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연구성과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중국의 간도 문제에 대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근본 의도는 향후 필연적으로 대두될 간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동북공정의 본질은 역사공정이 아니라 영토공정임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사라는 역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간도 지방에 대한 영토분쟁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간도 지방을 국가의 존립기반인 영토 문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간도 영유권 확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간도협약의 효력 여부와 법리적 해석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협약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을사조약 자체가 국제법, 조약 성립의 유효성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 즉 일본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약을 기초로 하는 간도협약은 이 조약의 위법성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무효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을사조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조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으로도 위법성이 제기된다.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 통감이 한국의 국제관계 및 외교 사무를 감리 지휘함과 외국 거주 한국의 신민과 이익의 보호, 그리고 일본의 중개에 의해서만 국제조약과 약속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도 지방과 같은 영토의 처분에 관한 내용은 을사조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약체결권도 여전히 한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을사조약이 보호조약이라 하더라도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외교권을 장악할 뿐 피보호국의 영토처분권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시급히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하여 중국에 간도 영유권 귀속 문제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1960년 이후 중국은 북경조약이 불평등조약이므로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할양받았던 영토를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향후 한국이 간도 지방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사실을 발굴하고 보다 정치(精緻)한 논리를 정리하는 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분야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현재까지의 연구성과가 만족할 만하지 못한 것은 국내외의 정치 현실 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일본인 관변 측 연구자들에 의해 그들의 대외정책, 즉 중국대륙침략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간도 문제가 연구되어 그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보다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어 가는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1990년대에 가장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이와 같이 이 분야의 연구가 국내외의 사회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면, 보다 많은 연구성과를 통한 간도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는 민족통일 후 중국과의 국경 영토 문제에 대한 분쟁에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

